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6. 1 선고 2019나5177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6. 1 선고 2019나51774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8. 22 선고 2016가단5276743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한국무역보험공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

담당변호사 성창재, 홍정표, 김기현, 유장미

피고, 항소인 1. 주식회사 A

2. B

3. E

4. F

변론 종결 2021. 4. 6.

판결 선고 2021. 6. 1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8. 22. 선고 2016가단5276743 판결

주 문

1. 이 법원에서 감축되거나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가. 피고 B와 피고 F 사이에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7. 6.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 E는 피고 B에게 피고 E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S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58,672,530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, 대한민국(소관 :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)에게 위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.

2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3. 원고와 피고 E, F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 E, F이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, B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A, B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

주문 제1의 가, 나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주식회사 A,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,132,680원과 그 가운데 45,390,200원에 대하여 2016. 9. 9.부터 2017. 1. 11.까지는 연 11%, 그 다음 날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연 15%,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. 피고 B와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6. 16. 체결한 매매계약을 20,807,39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 E는 원고에게 20,807,39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[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F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, 이 법원에 이르러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 E에 대하여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와 그 양도사실의 통지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.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, 위 피고들에 대해 전부 승소한 원고도 항소심 계속 중 그 청구취지를 확장·변경할 수 있고, 그것이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 내에서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

본다(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4다58261 판결 참조)]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가운데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,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다만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, D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도 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으므로, 이 부분은 제외한다).

2.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

○ 제1심판결 이유 중 "피고1"을 "피고 A"으로, "피고2"를 "피고 B"으로, "피고5"를 "피고 E"로, "피고6"을 "피고 F"으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13쪽의 "별지 목록3"을 이 판결의 "별지 목록3"으로 변경한다.

○ 4쪽 11째 줄 다음에 아래『』 부분을 추가한다.

『한편,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17. 3. 23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. 3. 27. 피고 F로부터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, 이후 피고 F의 채권자 T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1. 13.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S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.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3부동산이 매각되었고, 이에 따라 2021. 3. 22. 피고 E에게 58,672,53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.』

○ 8쪽 16째 줄부터 20째 줄까지 부분을 아래『』와 같이 고쳐 쓴다.

『(다) 이 사건 제3부동산에 대하여

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16. 7. 6. 피고 B와 피고 F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. 한편 피고 F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E에게 이전해주었고,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피고 E에게 58,672,53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,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E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고 채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.』

○ 9쪽 11째 줄부터 10쪽 11째 줄까지 부분을 아래『』와 같이 고쳐 쓴다.

『다. 피고 F, E에 대한 청구

1)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

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,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,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,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(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4다237192 판결).

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1 내지 13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F 및 전득자인 피고 E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며,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악의의 추정이 반복되어 피고 F과 E를 선의로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.

2)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

어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 그 부동산이 매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

말소되었다면,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,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(대법원 2001. 9. 4.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), 나아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, 원상회복의 방법은 그 배당금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,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각 이루어져야 한다(대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4다67806 판결,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7다91398, 91404 판결 참조).

또한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(전득자 포함)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,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,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동시에 여러 부동산을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처분한 결과 채무초과 상태가 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처분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,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(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6다1442 판결, 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 제3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그 배당절차에서 피고 E에게 58,672,53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,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이 사건 제3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위

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, 전득자인 피고 E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졌으나 배당금이 아직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,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피고 B와 피고 F 사이의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2016. 7. 6.자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원고의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의 피보전채권액인 75,158,950원¹⁾은 피고 E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인 58,672,530원을 상회하므로, '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계약 취소로 원상회복을 명하는 범위'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E는 피고 B에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S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58,672,530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 전부를 양도하고, 대한민국(소관 :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)에게 위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.』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, 이 법원에서 감축되거나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3항을 이 판결 주문 제1의 가, 나항으로 변경하고,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노태현

판사김창현

판사김용한

별지

1) 원금 47,132,680원 + 지연손해금 합계액 28,026,270원(= ①+②+③)

① 1,709,904원 = 45,390,200원 × 11/100 × 125/365(2016. 9. 9. ~ 2017. 1. 11.)

② 16,228,550원 = 45,390,200원 × 15/100 × 870/365(2017. 1. 12. ~ 2019. 5. 31.)

③ 10,087,816원 = 45,390,200원 × 12/100 × 676/365(2019. 6. 1. ~ 2021. 4. 6.)